

청렴한세상의 문을 여세요!

부정부패 OUT! | 청렴한 세상
공정사회 UP!

01. 세계속 청렴이야기

〈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, 핀란드〉

- * 흔히들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잘 알고 있는 북유럽에 소재한 나라 핀란드는, 청렴의식이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.
- *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납세 내역을 국세청 정보공개를 통해 알 수 있고, 특히 주식거래, 인허가 관련은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. 또한 공개된 소득에 비례해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생활속 ‘노블레스 오블리주’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.
- * 핀란드의 격언 중에 ‘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,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’는 말이 있다. 술은 입에만 대고 샌드위치는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핀란드 공직자의 태도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.

부천고용노동지청 청렴 웹진

『청렴IN부천』

제2호 2019. 6.

02. 꼭! 알아야 할 청렴 ISSUE

〈적극행정 앞장서 국민권의 구제 강화〉

■ 감사원·관익의 적극행정만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

- 적극행정만책 제도란 공직자가 규제개선 등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한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
- 감사원 등 실지감사 시 ‘현장만책’과 ‘신청에 의한 만책’으로 구분하고, 신청 시 감사원 홈페이지를 활용
- 적극행정 추진 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 가능(19.1월 도입)

03. 달라지는 청렴 관련법

〈공무원징계령 제11조의2(피해자 진술권) 등〉



■ 개정 공무원징계령은 성희롱 등 성비위 및 갑질에 관한 한쪽 당사자(피해자)의 권리행사 등 근거를 마련

- 성비위 기해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
- 중징계 사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
- 갑질 및 성비위 은폐 행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, 이는 포상으로 인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(최대 파면 가능)
- 해당 내용은 '19.4.17.자로 공포·시행

○4. 이달의 청렴 웹툰: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사례(2016.12.16., 춘천지방법원 결정)



청탁금지법 위반사례

“전국 1호 위반사례”

직무관련자에 금품 제공



청탁금지법! 이젠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- coming soon -

* 작품 출처: 코레일

05. 이달의 청렴 명언

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, 모든 덕의 근본이다.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.

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.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.

- 정약용 -

06. 5월 부천시청 소식

■ 칭찬합니다~!

근로개선지도1과 정세환 감독관이 5월의 칭찬 고레로 선정되었습니다. 우리 모두 칭찬해 볼까요??^^



◆ (홈페이지 칭찬합니다) 답답하고 겁도 났는데 감독관이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처리되는 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전화도 자주 줍니다. ... 고마워서 음료수라도 드리려고 했으나 극구 사양하기에, 이렇게 글로만 올리려니 제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. 이분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했던 노동부를 좋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... 감사드립니다!

(근로감독관 정세환 칭찬 내용 발췌)

■ 김포고용센터 청탁 금품 자진신고로 지청의 청렴의식 확산 모범사례 마련

- ◆ 김포고용센터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달에도 ‘신원불명 민원인의 청탁 물품’을 행동강령책임관(지역협력과)에 자진 신고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.
- 지난 5월20일 김포센터 집단 실업인정 교육 직후 신원불명의 민원인이 약 1만5천원 상당의 간식류를 김포센터 교육장에 놓고가자, 담당 상담원 및 서무는 이를 운영지원팀에 문의하였고 이어 자진신고서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- 이는 지난해 10월 수급자격 창구에 9천원 상당의 음료수가 발견되어 신고되는데 이어 우리 지청 두 번째 사례이며, 이러한 사례 공유를 통하여 다른 부서의 경우도 신원불명의 물품이 발견되면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하여 폐기 등 조치 하도록 관련 절차를 숙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